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18일, 신성범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1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4. 9. 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7.) 상정, 축조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8.) 상정, 축조심사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
안반영폐기)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4. 12. 23.)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신성범의원)

최근 지역소멸 문제에 대한 대응, 농촌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서민 주거안정 차원에서 귀농 정책을 수립하여 지속해오고 있음.

현행법에서도 귀농인인의 정착 지원을 위해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규정을 두고 있음.

하지만, 코로나 19팬데믹 여파 등으로 최근 귀농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으로 귀농인에 대한 정착 지원을 위하여 농지 등 취득세 감면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귀농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귀농을 통한 농촌 활성화 지원을 이어가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 연장
(개정안 제6조제4항)

개정안 제6조제4항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¹⁾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할 목적으로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는 현행법 제6조제4항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개정안 제6조제4항은 귀농인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여 농촌 경쟁력 강화는 물론 최근 대두되고 있는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례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일몰기한과 관련하여 신성범(Ⅱ)의원안은 일몰기한을 3년, 김종양·정희용(Ⅱ)의원안은 일몰기한을 각각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일몰기한의 설정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왔음을 참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 제6조제4항과 관련된 정부의 지원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업자금 이차보전 사업의 내역사업인 귀농귀촌 정착지원에 39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을 실시하고 있으며, 65세 이하의 세대주는 동 사업에 신청하여 농지 등 영농기반 구입을 위한 융자를 받을 수 있음.

개정안 제6조제4항을 통한 일몰기한 연장 심사 과정에서는 기존의 지방세 특례 지급 현황, 정부의 융자 지원 사업 및 귀농인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